### 교원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에 관한 규정

제정 : 1998.04.01

개정: 1998.05.01

개정: 1999.10.18

개정 : 2008.12.17

개정 : 2011.06.30

개정 : 2011.11.22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전임교원의 국내외 연구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1998.05.01,1999.10.18,2008. 12.17,2011.11.22,2020.03.01.〉

제2조(정의) "국내·외 연구 및 파견"이라 함은 국내·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구, 수학 또는 기술훈련 등으로 정부, 외부연구지원 기관 및 학교에서 국내·외에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3조(자격) ① 본 규정에 의한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 교원은 본 대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급 이상으로 귀국 후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수업에 지장이 없는 단기간의 연구 또는 정부파견 및 외국기관에 의한 초청인 경우나 국제 학술발표자는 예외로 한다. 〈개정 2021.12.01.〉 ①의2 교원이 2번째 이상의 연구 및 파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 한다. 〈개정 2020.03.01., 2021. 12.01.〉

- ②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의 대상자는 처장 및 보직을 맡지 않은 자 중에서 연구 및 파견으로 인하여 수업, 학생지도, 학사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③ 4명 이상의 교수가 재직한 학과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④ 연구비, 항공료, 체재비 등 부담금 전액을 공적 기관으로 부터 수혜를 받는 자이어 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제4조(인원 및 허가) ① 본 규정에 의한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교원은 학과의 교원 1/2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방학을 이용, 학사 및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자가 2개월 이내로 다녀오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  - ②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 교원은 제11조에 규정한 제출서류을 파견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0.03.01.. 2021.12.01.>
- 제5조(기간) 본 규정에 의한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- 제6조(신분과 처우) ①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 중인 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  - ②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 중인 교원의 급여는 정관에 따른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 12.01.>
  - ③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교원은 호봉승급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나, 승진은 유보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- 제7조(종료 후의 의무 연한)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교원은 기간 종료 후 연구 및 파견기간 의 3배수 이상의 기간을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03. 01., 2021.12.01.>
- 제8조(면직 및 보수반환) ①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교원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교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  - 1.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기간 중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<개정 2021. 12. 01.>
  - 2.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기간이 만료되어도 귀국 및 귀교하지 않을 때 <개정 2021. 12. 01.>
  - 3.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기간 중 여행목적과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 <개정 2021. 12. 01.>
  - ② 제1항의 경우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기간동안 지급한 연구비 및 급여 전액을 회수하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재정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03. 01., 2021. 12. 01.>
- 제9조(보고) ①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교원은 연구(파견)기관 도착 15일 이내에 체재지 도 착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  - ②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구자는 매 6개월마다 국내외 연구 및 파견 중간보고서를 총
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- ③ 파견기간 중 일시귀국 또는 포기귀국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. 2023.10.16.>
- ④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교원들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국내외 연구 및 파견 결과보고 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, 03, 01,, 2021, 12, 01.>
- 제10조(제한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된 조항(제8조 제외)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귀국 후 6년간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을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- 제11조(제출서류) 국내·외 연구 및 파견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 03. 01., 2021. 12. 01.〉
  - 1. 국내·외 연구(파견) 승인 신청서(별지서식 1호) 1부 (국내외연구기관의 초청허가(동의)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사본 첨부) <개정 2021. 12. 01.>
  - 2. 국내·외 연구(파견) 서약서 (별지서식 2호) 1부 〈개정 2021. 12. 01.〉
  - 3. 국내·외 연구(파견) 변경신청서 (별지서식 3호) 1부 <개정 2021. 12. 01.>
  - 4. 국내·외 연구(파견) 종료 보고서 (별지서식 4호) 1부 <개정 2021. 12. 01.>
  - 5. 국내·외 연구(파견) 기간연장 허가원(별지서식 5호) 1부(연장희망자에 한함) <개정 2021. 12. 01.>
  - 6. 국내·외 연구(파견) 연구계획서(별지서식 6호) 1부 <개정 2021. 12. 01.>
  - 7. 국내·외 연구(파견) 연구결과 보고서(별지서식 7호) 1부 <개정 2021. 12. 01.>

#### 보 친

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국내외 연구(파견) 승인 신청서

결	담 당	팀	장	처 장		총 장		경	담 당	팀	장	처 장
재								유				
		핰	과	직 위		성	명	(한	자)	,	생 년	월 일
언- (파	구자 겨)					한 글			<u>(1)</u>			
(* 1						한 자(			)			
연= 기	구(파견) 간				•	. ~				(	일	간)
국	가					경 유 지				수( 여-		
	연구(파견) 목 적											
	상기와 깉 바랍니다.	0  =	금내외	연구(피	·견	)을 하고져	<b>;</b>	상신	하오니 ā	허가하	여 주	시기
				년		월		일				
							(	여행지	<b>)</b> :			(인)
학과장: (인)												
첨부:1. 초청장사본 1부. 2. 서약서 1부.(6개월 이상 여행에 한함) 3. 교원 국내외 연구(파견) 계획서1부.(6개월 이상 연구출장에 한함)												

(별지 기	제2호	서식)
-------	-----	-----

서 약 서

성 명:

학 과:

직 위:

생 년 월 일:

위 본인은 ( )목적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( )국에 연구(파견)함에 있어 대원대학교 교원임을 명심하고,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킴이 없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은 물론, 교원 국내외 연구(파견)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여하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약 인: (인)

보 증 인: (인)

#### (별지 제3호 서식)

### 국내외 연구(파견) 변경 신고서

성	명:							
학	과:							
직	위:							
생 년 월	일:							
상 서를 제출	기인은 다음과 같이 국I 합니다.	H외 연구(파견	) 일정이	변경되어	이에	출국	변경	신고

- 1. 연구(파견) 목적:
- 2. 국가 및 연구기관:
- 3. 당초승인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( 일간)
- 4. 변경일자: 년 월 일( 공항)
- 5. 종료예정일: 년 월 일( 공항)

년 월 일

신고자: (인)

(별지 제4호 서식)

### 국내외 연구(파견) 종료 보고서

연구(파견)기간	당초승인기간	년	월	일(	일간)
	실제여행기간	년	월	일(	일간)
국가 및 연구기관					
연구(파견)목적					
비고(건의사항)					

위와 같이 국내외 연구(파견) 종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성 명: (인)

> 핰 과: 직

위:

### (별지 제5호 서식)

# 국내외 연구(파견) 기간연장 허가원

결	담 당	팀	장	처	장		총 장		협	l	담 당		팀 장		처 장
재									조	-					
OH -	구자	학	과	직	위		성	Ę	병 (현	<u> </u>	자)		생 L	<u> </u>	월 일
인- (파						한	한 글 ⑩								
						한	자(				)				
연- 기	구(파견) 간						. ~			٠		(	Ç	일긴	<u>''</u> })
여형	행국						경 유	지				1	수업 여부		
	연구(파견) 목 적														
바랍	상기와 같이 국내외 연구(파견)을 하고자 상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
					년		월			일					
									여호	행지	<b>ŀ</b> :				(인)
										_ 과증					(인)
첨부:1. 기간연장 사유서 1부. 2. 서약서 1부.															
대원대학교 총장 귀하															

(별지 제6호 서식)

## 국내외 연구(파견) 연구계획서

연구	국문									
과제명	영문									
국가			기간		년 년	월	일 일 (	일간)		
1.연구목적 및 필요성										
2.연구내용 및 방법										
3.연구의 기대효과										
학과:	직위	:		성명:			(인)			

(별지 제7호 서식)

### 국내외 연구(파견) 결과 보고서

인적사항	성 명		소	속			
	직 위		생 년	월 일			
국가		기간		년 넌	월 월	일 일 (	일간)
연구과제명							
연구결과 개요(	(간단히 기	재)					
			보고	!자:		(인)	